작은도서관 정책제안을 위한 법제적 연구

-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파트 입구, 시장 상가, 공원 안 등 동네의 어디서나 '작은도서관'이라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존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활동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준 것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특히 민간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이제 운영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작은도서관을 위한 유일한 법률이었고, 2020년 11월에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발의 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넘는 동안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7,000개 이상 존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인해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가 세워질 때마다 작은도서관 공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으면서 건립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 놓은 법률 등으로 인해 양적인 팽창만 되어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인체제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은데 그 일인이 관장, 사서, 행정원, 기타 잡무까지 감당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정책에 대한 것을 알고, 고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법은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일이 아닌 다른 동네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또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정책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또한 아직 심의 중이지만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잘 살펴보고 우리와 더 밀접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자 시작한 연구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정책연구까지 해주신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관장님과 아낌없이 법률자문을 해주신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척박한 작은도서관의 현장을 이해해 주시고 정책과 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감사드립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큰 단체는 아니지만 작은도서관과 함께 길을 만들고 발걸음을 떼는데 동행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 박 민 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법률자문 김 종 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서론 ····· 0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01
1-2. 선행연구 ····· 02

2. 이론적 배경 ····· 04
2-1. 법의 개념 ····· 04
2-2. 법의 종류 ····· 05
2-3. 법의 위계 ····· 07
2-4. 법의 제정절차 ····· 13
2-5. 행정법의 이해 ····· 17

3. 작은도서관 관련 법 ····· 19
3-1. 도서관법 ····· 19
3-2. 작은도서관 진흥법 ····· 27
3-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39
3-4.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례 ····· 79
3-5.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 제안 ····· 90

4.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8
4-1. 설치기준 ····· 108
4-2. 운영인력 ····· 110
4-3. 지원 ····· 111
4-4. 조직 ····· 114
4-5. 유사 시설의 법령 비교 ····· 116

5. 결론 및 제언 ····· 135

참고문헌 ····· 137

[표 목차]

[표 1]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조례의 상충 해결안 ····· 83
[표 2]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검토 ····· 91
[표 3] OO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 전후 조문목차대조 ····· 96
[표 4] 「OO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98
[표 5] 작은도서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현황 ····· 113
[표 6] 작은도서관 관련 지자체 지원 현황 ····· 113
[표 7]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 현황 ····· 115
[표 8]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조문목차 비교 ····· 118
[표 9]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 ····· 127
[표 10] 중등학교 학생수별 학교수 ····· 128
[표 11] 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교수 ····· 128

[그림 목차]

[그림 1] 법률 제정절차 ····· 13
[그림 2] 대통령 제정절차 ····· 14
[그림 3] 총리령 및 부령 제정 절차 ····· 16
[그림 4]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및 조례 관계도 ····· 79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고 특정인만이 다룰 수 있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모든 행위와 관계 속에 작용하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 특히 기관이 대상을 정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시설, 인력, 운영의 기준 등은 법이 정하고 운영 주체에게 권리와 의무 또한 법으로 부여한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부터 엄대섭을 중심으로 전개된 마을문고 운동에서 시작되어 시대의 변천사와 함께 그 형태와 성격이 변화되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운동의 성격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 공간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였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서의 작은도서관은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통해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2006년 문화관광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선정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신설하면서 정부주도 하에 작은도서관의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하면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후 2012년에 이르러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독립법률을 갖추게 되었다.

법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사회 공동체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시대의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공표 의무화를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변화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흥을 위한 법률로써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에 발의하여 심의 중이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을 소개하고 동시에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법규명령의 형태와 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마련과 정책수립, 법령개정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일으켜 정책제안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하고, 이후 개정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기 다른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며 범정부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잡는데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 중 대부분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가 차지하였으나 최근 작은도서관의 정책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연구 분야에도 나타나면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연구 등이 확대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에 관한 연구로 김홍렬(2010)은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유승(2014)은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인 고찰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가장 시급한 작은도서관의 법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홍렬(2020)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윤송현(2021)은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도서관 조직 및 업무개선,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개선, 공공형 작은도서관 도입,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과 평가 개선안을 제시하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에 따른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법률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관한 연구로 오남수(2013)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 연구를 통해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 배치 제안, 인력배치의 의무규정, 주무관청의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장서기준의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강봉숙(2019)은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진흥법 개정 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와 비교하면 양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서교사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김종성(2018)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대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실질적 학교도서관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기준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사서교사 양성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민간의 독서운동으로 시민사회에 퍼져나갔지만 정부정책으로 양적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사회서비스 기능을 하는 교육문화시설의 하나로 인식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고 관리한다. 지원과 관리에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법에 규정한다. 다시 말해 작은도서관의 정책 수립과 지원 제도는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작은도서관 관련법은 중요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법의 개념과 종류, 위계, 개정을 위한 과정 등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법의 이해를 돕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의 개념과 종류, 위계, 법규명령의 제정절차 등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2.1 법의 개념

법철학자 Kant는 법을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법칙과 인간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법칙으로 구분하였다. 자연법칙은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변화 없이 나타나는 필연의 법칙이며 규범법칙은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하지 마라”,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하지 마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등과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규제되는 당위의 법칙을 말한다. 즉 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은 서로 간의 이익이 상충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이 필요하다. 즉 “사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법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임을 표현한 것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규범이다. 법의 강제성은 법

이 다른 사회규범인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즉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권력기구인 입법부와 정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국가권력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행되는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형벌부과 등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예로는 형법, 형사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즉, 법은 강제규범이다.

따라서 법(法)이란 사회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행위규범(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국가의 강제규범을 말한다.

2.2 법의 종류

법은 표현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고, 성립형식에 따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으로 나누어진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법률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명령, 각 광역지자체의 조례 등은 자치법규 즉, 조례라고 한다.

(1)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또는 제정법(制定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써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공포된 법을 말한다. 성문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되고, 고정적이며, 그 개폐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성문법의 장점으론 법률의 내용과 의미가 명백하고 규범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반하여 단점으로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가변성에 대비하지 못한다. 이처럼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대륙법계라 하는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이 여기에 속한다.

불문법 또는 비제정법(非制定法)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성문법과 같이 일정한 법제정기관에 의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법을 말한다. 불문법은 발생사적인 원인으로 볼 때, 법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서 성문법에 선행하여 관습법(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사회적으로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이루지는 법규범: 예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명의

신탁, 사실혼 등), 판례법, 조리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불문법은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게 되어 법이 경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법의 존재가 명확하지 못하여 법적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미법계라 하는바, 영국(헌법이 없음), 미국(기본법이 있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법 국가들임)

(2)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 안에서 인정되고 적용되는 법으로 국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효력의 범위는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예: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건축법 등)

국제법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은 여러 개의 국가에 미친다. 조약(條約)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조약이라 부른다. 한미원자력협정, 소파협정, WTO 협정 등이 있다.

(3)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같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 사람(일반사람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장소{전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4)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것을 규

정하는 법을 말하며, 민법, 상법, 형법,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의 행사, 보전, 이행, 강제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말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 소액사건절차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률의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2.3 법의 위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높은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있다. 이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 기관은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은 이곳에서 법률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행정 기관은 정부이다. 정부의 최고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은 필요한 경우에 명령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사법 기관은 법원으로 법관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

법학자인 한스 켈젠(Kelsen. H.)은 법규범에는 하위의 법규범과 상위의 법규범이 있으며 하위의 법규범은 상위의 법규범에서 효력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 이상의 상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근본 규범이 존재하며, 이 근본 규범이 헌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는 것과 일치하며 법규범의 위계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차례로 존재하게 된다.

(1) 헌법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국가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보호의 자유, 재산권, 환경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행정부, 사법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민주화, 헌법개정을 포함한다.

헌법이란 용례는 동양 고전에는 없었고, 영어의 constitution을 번역한 말로 처음에는 근본율례, 朝綱·國制·國憲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다가, 1870년대 일본에서 헌법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게 되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제10장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선언하고 있는바, 체계상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본문 제1장 총강은 국호, 국가형태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구성과 대한민국의 기본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체제에 관한 규정, 제10장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법률

법률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하위 법규범으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은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법치국가의 질서에 부합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헌법 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여기서 대표발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3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12일 국회 도종환 의원을 대표로 20명(도종환.강득구.강민정. 강선우.김성주.김영배. 박 정.송영길. 안규백. 안민석.양정숙. 오영환. 유정주.이광재.이병훈. 이상직.이수진..조승래. 최종윤.한무경)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상정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2020~2024)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명령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명령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제정경제처분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예: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긴급경제재정명령처분)

명령은 제정권자의 표준으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및 행정 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으로 나누어지고, 그 성질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진다. 그 효력은 대통령령이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동동한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법률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하위규범으로 도서관법 시행령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등이 명령 중 대통령령에 해당하며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명령 중 부령에 해당한다.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등을 법령이라 하고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 훈령, 예규, 고시를 행정규칙이라 한다.

(4) 규칙

규칙이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하는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규칙 중에서도 그 제정기관과 법적 근거에 따라 성질과 효력이 일정하지 않다.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 중에서도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많으나(예:도서관법 시행규칙) 이는 엄격히 말해 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인 행정입법에 해당한다.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의하여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으로서 감사원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군법회의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교육 규칙 등을 제정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 및 기준 등에 간하여 발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율을 말하고, 내부적인 규율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형식에 따라 고시형식과 훈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나눈다. 고시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고시) 행위를 말한다. 훈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는 크게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나누며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하고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법규문서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하 '법령'이라한다) 등에 관한 문서이다. 일일명령은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

2022년 3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행정규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서관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행정규칙은 총 108건으로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규정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행정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관련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규칙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5)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예컨대 헌법(憲法) ·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 교육법(敎育法) · 지방세법(地方稅法) ·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 조례(條例) · 규칙(規則) 등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서의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사무로서 예산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별 예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지원, 관리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고 이를 근거로 작은도서관 사무를 수행한다.

(6) 조약

조약은 문서에 의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로서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에 상관없다. 조약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고,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은 대통령이 비준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제1항)

2.4 법의 제정절차

(1) 법률 제정절차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그림 1] 법률 제정절차

(2) 대통령 제정절차

도서관법 시행령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림 2] 대통령 제정절차

① 법령안 입안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과정이다.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알린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⑥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⑧ 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경우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3) 총리령 및 부령 제정절차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다.

[그림 3] 총리령 및 부령 제정절차

(4) 법률안과 대통령 및 총리령·부령의 제정절차 차이점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경우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2.5 행정법의 이해

2.5.1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Verwaltungsrecht)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공법(公法)을 총칭하여 말한다. 행정법이란 국가기관과 그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 중에서 헌법을 제외한 공법(公法) 전부를 말한다.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경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공공주택특별법, 감염병예방법, 정부조직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국세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권법, 병역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해당한다.

2.5.2 행정법의 특성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과의 법률관계인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는 본래 공법관계인 경우와 사법관계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법관계인 경우에서도 국가도 개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되며, 사법인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행정법상 적용되는 대상은 공법관계인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상 우월적인 지원에 서게 되므로 인하여 사법관계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1) 공정력

공정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기 전에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국민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2) 자력집행력

공법관계에서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즉 사법관계에서는 법원에 제소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공법관계에서는 법원에 제소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불가쟁력이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고 사인은 그 소송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행정법의 특성에 포함한다.

불가변력이란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중한 절차를 거친 분쟁 해결 절차 등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것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3. 작은도서관 관련법

작은도서관이 관계하는 법률로는 크게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으며 기타 관계되는 법률로는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이 있다.

3.1 도서관법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도서관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도서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몇 차례의 전부 혹은 부분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도서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법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전부개정과 십여 차례의 일부개정의 과정을 거쳤고 2021년 2월 도종환의원 등 42인이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하고 대안반영 후 2021년 11월에 가결되었으며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제4조).

나.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

조).

마. 시 · 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제19조 및 제24조).

사. 시 · 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 ·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 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 · 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 · 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 ·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 · 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

(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 · 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도종환의원 등 10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은 작은도서관 관련하여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이어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명시하였다. 별표 1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밖에 도서관법은 도서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보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은 조문이 과도하게 많고 내용이 방대하며 작은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등이 독립법률로 존재하는 등 법체계에 혼선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3.2 작은도서관 진흥법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 배경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제정되어 8월에 시행되었다.

이후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공표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는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정하였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방향(제6조),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제7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육성(제8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제9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제10조), 작은도서관의 해외보급(제11조),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제12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 육성(제13조), 포상(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회 도종환의원 대표 발의로「작은도서관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법률 제정 이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현재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사서 및 운영인력을 두지 못하거나 휴·폐관을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따라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작은도서관 업무규정 및 등록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전후 비교

다음은 현행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목차 비교표이다.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신 설>	제6조(설립 등)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삭 제>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삭 제>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삭 제>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삭 제>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삭 제>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삭 제>
<신 설>	**제8조(작은도서관의 업무)**
<신 설>	**제9조(운영 지원 등)**
<신 설>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ㆍ운영)**
<신 설>	**제3장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등**
<신 설>	**제11조(등록 등)**
<신 설>	**제12조(폐관 신고)**
<신 설>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신 설>	**제14조(평가)**
<신 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신 설>	**제16조(청문)**
<신 설>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신 설>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신 설>	제18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제1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제3장 보칙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4조(포상)	제20조(포상)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신 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 설>	제23조(과태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정의와 구분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였다.(안 제2조).

② 운영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③ 업무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였다.(안 제8조).

④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조).

⑤ 전담부서 설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⑥ 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1항).

⑦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2항).

⑧ 폐관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안 제12조).

⑨ 평가와 포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⑩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5조).

(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며, 사서 등 전문직원(이하 “사서 등 직원” 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에서 제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등록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제6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작은도서관의 업무)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정리 및 제공 2.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3.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및 독서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운영 지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2.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3. 사서 등 직원의 확보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장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등록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폐관 신고) 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① 시·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의 운영,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4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속 휴관하거나, 1년 개관일수가 전체일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등록 취소된 작은도서관은 1년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아니면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

3.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임사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며, 사서 등 전문직원(이하 “사서 등 직원” 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에서 제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에 자료공도이용에 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등록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able>
<tr><th>「작은도서관 진흥법」</th><th>「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th></tr>
<tr><td>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td><td></td></tr>
<tr><td>제6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d>제3조(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에 관한 기준은 별표1와 같다.
[별표1]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사서
<table><tr><th>시설
건물면적</th><th>도서관자료</th><th>사서</th></tr><tr><td>66제곱미터 이상</td><td>3,000권 이상</td><td>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둔다.</td></tr></table>※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td></tr>
<tr><td>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td><td>※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제1조 목적
제2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침,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사항,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과 다른 문화시설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5조 임기
제6조 위원장의 임기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등</td></tr>
</table>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8조(작은도서관의 업무)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정리 및 제공 2.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3.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및 독서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9조(운영 지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2.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3. 사서 등 직원의 확보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각 조례에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설치" **제00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사서 등 직원의 확보를 위한 인건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각 조례에 "작은도서관 지원전담부서의 설치" **제00조(작은도서관 전담부서의 설치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전담부서에는 작은도서관 진흥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3장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등록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립 작은공공도서관 또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폐관 신고) 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폐관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시설과 도서관 자료 2. 작은도서관 인력 현황표 및 증명서류 3. 작은도서관 운영현황보고서 4. 작은도서관 실적현황보고서 5. 작은도서관 재무 증명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전담부서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의 운영,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도서관설립 목적의 달성도 2. 도서관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적정성 3. 작은도서관의 사서 등 직원 현황의 적정성 4.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실적 5. 작은도서관 재무 증명서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4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속 휴관하거나, 1년 개관일수가 전체일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등록 취소된 작은도서관은 1년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8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아니면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table>
<tr><th>「작은도서관 진흥법」</th><th>「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th></tr>
<tr><td>제23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td><td>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이 아닌 자가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법 제23조 제1항</td><td></td><td></td><td></td></tr><tr><td>가. 작은도서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tr><td>나. 작은도서관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td><td>100</td><td>150</td><td>200</td></tr></table></td></tr>
<tr><td></td><td>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0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
</table>

「작은도서관 진흥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아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의 위임사항을 토대로 했을 때 시행령 개정안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정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하위 명령에 담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또한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후에라도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에 자료공도이용에 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제3조(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에 관한 기준은 별표1와 같다.

[별표1]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사서

시설 건물면적	도서관자료	사서
66제곱미터 이상	3,000권 이상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둔다.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제안
제3장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립 작은공공도서관 또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폐관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시설과 도서관 자료 2. 작은도서관 인력 현황표 및 증명서류 3. 작은도서관 운영현황보고서 4. 작은도서관 실적현황보고서 5. 작은도서관 재무 증명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전담부서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제안
제7조(작은도서관의 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도서관설립 목적의 달성도 2. 도서관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적정성 3. 작은도서관의 사서 등 직원 현황의 적정성 4.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실적 5. 작은도서관 재무 증명서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제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작은도서관이 아닌 자가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가. 작은도서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나. 작은도서관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150	200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0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개정 제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후 조문의 신설 및 개정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의 법률자문 내용을 정리하였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의견 : 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계획이 확충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고 인프라와 관련된 핵심지표 부족과 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 역할, 중요성 등을 제시하지 못해 심도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분석과 정책제안의 자료로 미흡하다. 이에 현실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이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답변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중복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제9조(운영 지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2.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3. 사서 등 직원의 확보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진흥 기본계획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다. 특히, 도서관법 제14조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흥기본계획을 규정하는 경우에 중복적인 규정으로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도서관법 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20. 6. 9.>

② 작은도서관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견 :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 심의, 조정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 19명 중 교수 13명, 출판사대표, 병원장, 도서관 단체대표, 학술정보원 연구위원, 신문기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아 7,000개소의 작은도서관의 정책이 국가도서관정책에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을 각 관종별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관계자가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종합된 작은도서관 정책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답변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한다. 또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는 그 설치 근거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두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도종환 의원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진흥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서관법 제12조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및 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작은도서관진흥위원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법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 3. 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4.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 4. 5., 2012. 2. 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11. 4. 5.>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⑥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4. 5.> ⑧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전담부서의 설립 및 운영

의견 : 전국에 실핏줄처럼 존재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모으고, 바른정책과 소통구조를 담당하여 건강한 독서문화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조직구조의 필요성으로 지원전담부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답변 : 도종환 의원안 제10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방향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전담부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사서 및 전문인력 등

의견 : 작은도서관은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대부분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활동가들이 무급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의 질 개선이 어렵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자 서비스가 어려운 곳들이 많다. 이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답변 : 도종환 의원안에 따르면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전문인력에 관한 활용방안에 관한 부문을 규정하여야만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제6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이 없음!!!!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⑤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의견 :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조항을 시행령에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답변 : 현행법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등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도서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1] 이에 따

라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일종인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사립의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도종환 의원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등록제도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현행 제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작은도서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재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기준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사서를 배치할 의무는 없는바, 도종환 의원(안) 제6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의 기준을 설정할 때[3)] 작은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종환 의원(안) 제1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의 취소 규정은 기관 본연의 목적에 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익을 확보하고 적법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문이다.

---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제11조(등록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폐관 신고) 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의 운영,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4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속 휴관하거나, 1년 개관일수가 전체일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등록 취소된 작은도서관은 1년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 25.>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9. 9. 25., 2012. 8. 17.> ③ 영 제18조제2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 9. 25., 2012. 8. 17.> ④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 9. 25.>

⑥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의견 :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1회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검증단계가 없고 증빙을 첨부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실태조사 일부 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매년 보고되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

도서관의 운영평가인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와 비교해볼 때 그 내용의 양과 질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 노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균형 잡힌 실태조사의 실시와 결과보를 위해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결과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답변 :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담아야 할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또한, 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과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의견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행법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답변 : 도종환 의원 안에 따르면, 제6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즉,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새롭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대학도서관진흥법처럼 규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대학도서관진흥법 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작은도서관 지원비

의견 : 작은도서관 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 : 도종환 의원 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원비와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작은도서관 지원전담부서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안 제9조, 제10조, 제17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조(운영 지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2.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3. 사서 등 직원의 확보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작은도서관 협력망 구축-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의견 : 작은도서관 협력망 구축 및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 : 대학도서관진흥법 유사입법례를 보아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로 제안할 수 있다.

제00조(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간 협력망 구축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작은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사관간 협력망의 구축·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독서문화

의견 : 작은도서관의 주요기능 중 독서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 :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는 의문이다.

도서관법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 3. 25., 2016. 2. 3.>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③~④<생략>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례

[그림 4]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및 조례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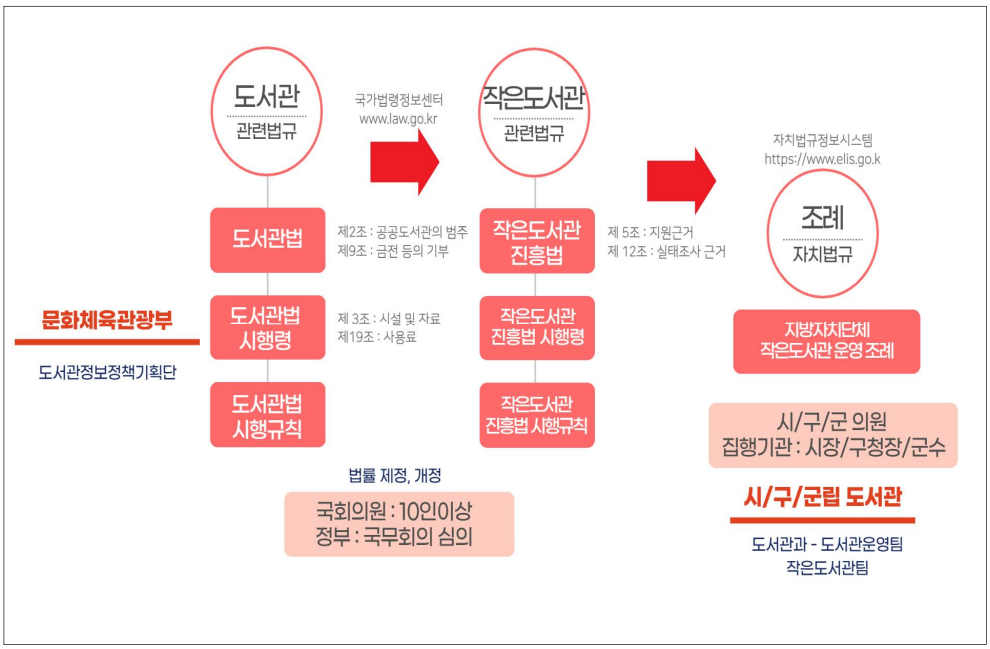

(1) 조례(條例)의 의의

조례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형식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도구이며 주민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지만, 규율 내용의 일반성이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조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처분적 조례)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도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4)]

4)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2) 조례의 성질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따라서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조례의 구속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 미치며 또한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례도 있다.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3) 조례와 법규명령과의 차이

조례와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모든 행정주체에 의한 입법이지만 형성대상에 대한 권한의 귀속에 차이가 있다. 법규명령의 발령권

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구청장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하거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내지 정지함에 그치고 있어 그 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나 행정법 질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 처분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무효이어서 결국 처분청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극히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견에 의하면 위 영업정지처분과 유사하게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을 조례로 정하였거나 상위규범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령에 기하여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데**,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와 행정권한의 하향분산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성격의 하자를 가지는 행정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엄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법 적합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현을 도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영업정지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이나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은 권한상 국가의 영역에 귀속하는 것이나,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며 자기책임으로 행사된다. 즉 조례제정권은 자치를 의미하나, 법규명령의 제정은 타율적인 법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법정립 권능의 성질여하에 따라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때문에 법규명령은 발령시마다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만(헌법 제75조, 제95조), 조례는 “일반적인 수권 즉 포괄적인 수권”으로 이루어진다.

법률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조례제정기관인 지방의회가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구성되는 기관인 까닭이다.

(4) 조례의 근거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구체화 규정일 뿐이다.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규범의 정립자와 규범의 수범자 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힘을 활성화하고, 지역적인 특성의 고려하에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입법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려는데 있다.

(5)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조례도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법률우위의 원칙(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행정주체의 모든 작용(공법적행위, 사법적행위, 수익적 행위 부담적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함)과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측면에서 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문제로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없는 규정 또는 초과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담기는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 제117조제1항 내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에 당연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한편, 법률의 규제내용이 전국적인 최적기준(예: 환경오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의 규제는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령의 내용을 추가 또는 초과하는 내용의 조례(추가조례 또는 초과조례)가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김남진/김연태) 그러나 이는 조례의 규율대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경우, 규제적이거나 침익적인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서도 안될 것이다.(추가조례/ 초과조례 불가)

반면에 지방주민의 급부나 수익적인 조치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는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두어 평등한 혜택을 부여하여는 취지가 아닌 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법령의 급부기준을 초과하는 사항도 규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추가조례/ 초과조례 가능)

작은도서관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도서관법 제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르면, 시설(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과 도서관자료(1000권 이상)를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도서관법 제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기준에 합치하는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9조에서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보다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보다 강화된 시설 및 자료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도서관법과 지역별 작은도서관 조례의 상충 내용을 살펴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표 1]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조례의 상충 해결안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시설·도서관자료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2.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 12. 30>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8.> 1. 삭제 <2019. 5. 8.> 2. 삭제 <2019. 5. 8.>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8.>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이 85㎡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준) 작은도서관은 시설 및 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한다. 다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 등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7.> 1. 1,000권 이상의 장서 2. 6석 이상의 열람석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확보.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2016. 5. 20.>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치 및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정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개방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 ②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개정 2016. 6. 9.> 3. 1,000권 이상의 장서 <개정 2016. 6. 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9. 17.><단서삭제 2018. 9. 17.> 1. <삭제 2018. 9. 17.> 2. <삭제 2018. 9. 17.> 3. <삭제 2018. 9. 17.> 4. <삭제 2018. 9.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18. 9. 17.>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본호신설 2018. 9. 17.>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본호신설 2018. 9. 17.> 3. 건물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2018. 9. 17.>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본호신설 2018. 9. 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9. 17.><일부개정 2018. 9. 17.>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 9. 17.><일부개정 2018. 9. 17.>

3.5.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근거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개정의 과정을 거친다.

2022년 3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조례를 검색한 결과 전체 177개로 확인되었다.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이며, 시·군·구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155개, 규칙 5개, 훈령 1개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시·도, 시·군·구마다 조례의 명칭이 지원조례, 진흥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제각각이다. 또한, 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시·도 조례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나, 그 명칭과 수립 주기, 포함 사항 등이 시·도마다 달라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의 수준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목적이 지역 특성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전체 국민이 사회서비스와 문화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례에 해당 내용을 담게 하는 등의 표준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준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리의 업무가 좀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게 할 것이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거시적인 정책수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해당 조례 개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위임사항

법률의 위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사항(법규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로써 모두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담당자이므로 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표 2]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검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사항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완비 전제)
안 제6조(설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면적 99제곱미터이상, 장서 3,000권이상, 열람석 12석, 공립의 경우 1명의 사서 배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시 사서 1명 배치 면적은 99제곱미터이상 사립작은도서관 조성 가능성 낮음.
안 제7조제1항(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명시하여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안 제7조제3항(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 개정 시 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9조(운영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에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도의 지원비에 대응하는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지원비와 대응비의 용도는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사서 등 직원의 확보,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비와 대응비의 예산편성 및 지원 사립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용도를 근거로 조례에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안 제11조(등록)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설, 인력, 자료를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다.	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 주관을 명확히 함. ·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사무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가 필요함.

안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14조(평가) 시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운영, 예산 지원 및 포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작은도서관 평가와 결과의 공개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예산지원 및 포상 내용은 조례로 정함
안 제15조(등록의 취소 등)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부실 운영의 사유의 항목에 따라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안 제16조(청문)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시 청문을 한다.	작은도서관의 양적확대 보다 질적성장을 위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폐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전수조사 등과 같은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사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8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 장려와 진작을 위한 지원을 함
안 제20조(포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 관련 공로자 포상에 대한 조례 명시 필요함.

안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아니면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 및 기관에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작은도서관 조례 조문목차 대조

[표 3] OO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 전후 조문목차대조

현재 조례	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적용범위)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제5조(진흥 계획의 수립)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6조(지원전담부서)
제7조(위치 및 접근성)	제7조(위탁운영 등)
제8조(시설 및 자료기준)	제8조(운영 및 관리)
제9조(협의회 운영 및 기능)	제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제11조(설치)
제12조(회의 등)	제12조(설치기준)
제13조(지원신청 및 취소 등)	제13조(등록 및 취소)
제1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1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운영인력)
제16조(자체 점검)	제16조(운영시간)
제17조(운영인력)	제17조(휴관)
제18조(운영시간 등)	제18조(자료관리)
제19조(출입제한)	제19조(이용의 제한)
제20조(회원제)	제20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21조(자료대출)	제21조(운영 지원 등)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2조(보조금 지원)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협회 등의 지원)
제24조(수당 및 여비)	제24조(지도.감독)
제25조(사기진작 등)	제25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부칙	제27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8조(자치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9조(위원장의 직무)
	제30조(회의)
	제31조(위원의 해촉)
	제32조(포상)
	제33조(시행규칙)

(4) 작은도서관 조례 제안

[표 4]「OO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OO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리책임부서명 : OO도서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OO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OO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OO시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며, 사서 등 전문직원(이하 “사서 등 직원” 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에서 제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OO시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OO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대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진흥계획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OO시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발전 방안
2.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홍보 및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설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전담부서)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작은도서관 진흥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컨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조사,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후원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읍·면·동에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문화도서관본부의 관리주체 책임하에 관리하되 각 읍·면·동장과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OO시 문화도서관본부(OO중앙도서관)는 장서관리, 독서프로그램,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3. 각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의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제3장 작은도서관의 설치·등록 등

제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OO시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및 독서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소외지역
2. 지역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2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66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3,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설치기준에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을 완료하고 도서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의 운영 등

제1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

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5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5일이상, 1일 8시간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5일이상, 1일 4시간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관리)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OO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설치기준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서 및 자료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4.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확충비
5. 사서 등 직원의 확보 및 인건비
6.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7.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8.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OO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할 것
2.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장서 수 3천권 이상을 구비하고 매년 신규 자료를 추가로 갖출 것
3.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복리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② 지원 대상·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규 지원 대상 선정 시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OO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협회 등의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간 정보교류 촉진
2.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육성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의 지역 주민참여 증진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본조신설 2017.12.29.]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 및 운영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작은도서관의 대표 및 운영자는 별지 제0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운영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군이 요청하는 기본사항 및 실적 증빙서류 등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
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대표 및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작은도서관 대표 및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27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각 1명이며, 위촉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지역

주민은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자치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설치기준

2022년 3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서관법의 후속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인에 따르면 도서관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이 포함되며 건물면적 99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3,000권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논의 및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0년 전국작은도서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작은도서관의 전용면적은 1관당 평균 111.5제곱미터이며 중위수는 91제곱미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이하의 작은도서관은 절반 이상인 3,648개관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기준에서의 설치면적은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지원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면적 기준의 상향은 절반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설치면적과 기본장서 기준이 봉사대상 인구 2만명 미만 지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인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기본장서 3,000이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로 인식되어 왔던 작은도서관이 더이상 규모의 상징인 “작은”이라는 이름과 달리 기능과 역할 중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불러올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안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이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부칙

제2조(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과 등록신청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설·장서·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하고, 그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등을 하도록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립·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서·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5)]

이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설치면적의 확대로 인한 시설 개보수와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신설할 당시 기존의 문고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기에 소급적용에 대한 지적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또한 소급적용하는 경우 면적은 작지만 지역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높은 등급의 작은도서관들 조차도 문을 닫는 일이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의 독서문화공간을 관에서 뺐고 독서문화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5) 참고입법례
「동물보호법」(법률 제14651호, 2017.3.21.)
부칙 제4조(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최소 설치기준을 최소 66제곱미터로 하고 설치면적 확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공간확장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의 사무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이전 비용과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기준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사서를 배치할 의무는 없는바,[6] 안 제6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의 기준을 설정할 때[7] 작은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즉, 설치기준에 운영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서”를 정의하면서 “사서 등 직원”의 약칭을 동시에 규정하여 “사서”의 해석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약칭되고 있는 “사서 등 직원”은 개정안 전체적으로 사용이 많지 않으므로(2회) 정의에서는 “사서 등 직원”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에서 “사서 등 전문직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해석상 명확하다고 보인다.

전문직원의 기준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의 사서교사·실기교사, 사서 등을 정의한 것과 같이 진흥법 내 정의 조항에 규정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와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담보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하고 의견청취와 조율의 과정을 거쳐 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에 관한 기준

4.3 지원

개정안 제9조(운영 지원 등) 및 제14조(평가)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구분	배치기준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7) 안 제6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포괄 위임되어 있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일반회계 예산을 2조 4429억 원 편성하고, 이중 독서문화와 관련한 예산으로 출판산업육성(42,485백만 원) 내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7,209백만 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16,621백만 원) 내 길 위의 인문학 16,499백만 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12,157백만 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7,983백만 원, 국립중앙도서관운영 79,768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예산 7,983백만 원의 90.7%(72억 원)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이며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이 8%(약 6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1%(약 1억 원)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작은도서관 예산 약 46억 원은 전액이 조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비슷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1,830억 원, 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노인단체 지원 405억 원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그 내용 또한 운영비, 환경개선비, 공기청정기, 관련 민간단체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 해결형의 지원책으로 다양한 예산과 지원을 받는 것과 상반되게 작은도서관의 예산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예산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방향에 영향을 끼쳐 작은도서관의 운영 성패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예산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양질의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민간단체 지원 및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책 소독기와 같은 필수 기자재 지원 등이 요구된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인식하고 정책발굴에 소

극적이며,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변화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동일한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작은도서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현황

구분	예산(백만원)	지원규모	사업명
2020년	7,239	순회사서 270명 작은도서관 956개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순회사서 1인이 지역의 작은도서관 2~4개관 지원)
	200	작은도서관 70개관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공연·강의 가능한 문화예술전문가 지원 통한 프로그램 운영)
	270	작은도서관 90개관	-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서, 은퇴교사 등의 책친구 지원 통한 프로그램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6] 작은도서관 관련 지자체 지원 현황

(단위: 관수)

항목	인력 지원	예산 지원	도서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전체	1,088	3,012	1,908	1,723
공립	521	856	561	525
사립	567	2,156	1,347	1,1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12조[8]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직원 수, 개방

8)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간, 이용자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공유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과정은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빙자료 제출 또는 실사 등의 현장조사가 없어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도서관의 평가결과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라는 실태조사의 취지를 감소시키고 개별 작은도서관들에게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조사의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적절한 보상이 작은도서관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조직

2022년 3월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7,328개소이다. 17개 시・도에 평균 43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며 작은도서관 확대 정책에 따라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전담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담당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표 7]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 현황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1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3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4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도서관정책과
5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문화도시정책관
6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7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9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10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11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12	충청남도(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13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4	전라남도(관광문화체육국)	전라남도립도서관 정책운영팀
15	경상북도	경북도서관
16	경상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남대표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전담인력 부재와 업무 중복, 잦은 인사개편으로 지원조례에 근거한 행정의 지원이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여 도서관정책담당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고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지속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광역단위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자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왔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민관협력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는 시·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전담 인력 확보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운영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민관협치의 장을 만들고, 주민참여와 자치활동, 지역 독서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5 유사 시설의 법령 비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독립법률인 진흥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진흥법을 독립법률로 두고 있다는 점과 흡사하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서관법에 매우 의존하고 독립법률이 존재하지만, 해당 법률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더욱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도서관법에 따르면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두고 기존에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이 특수도서관으로 분리 구분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전국도서관 운영평가결과보고서 등에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이 포함되는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작은도서관만 별도의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운영평가지표를 갖도록 하고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

례집 등 정부의 포상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작은도서관 관계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여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 기조에 큰 변화와 개선의 기대를 거두게 한다.

과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도서관법과 중복적인 규정을 두지 못해 진흥계획수립,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반문하게 한다.

이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독립법률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유사한 사회적 역할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과 시설의 법규명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교육부 소관 업무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비교해 볼 때 도서관법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법률로서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기능하고 있다.

[표 8]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조문목차 비교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설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제2장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6조(설립 등)	**제8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9조 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제8조(작은도서관의 업무)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9조(운영 지원 등)	제11조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3장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3조 시설·자료 등**
제11조(등록 등)	**제14조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제12조(폐관 신고)	**제15조 독서교육 등**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제출)	제16조 업무협조
제14조(평가)	제17조 금전 등의 기부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 지도·감독
제16조(청문)	
제4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제17조(작은도서관의 육성)	
제18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포상)	
제2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과태료)	

진흥기본계획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고 제10조 지원전담부서의 업무의 하나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

획) 조문을 통해 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과 계획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진흥위원회에 관한 조문이 없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에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닌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두어 강제성이 없다. 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는 진흥위원회의 조문을 별도로 두고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이밖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08.2.29.,2013.3.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더불어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두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교육부장관소속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시、도 교육감소속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 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과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전담부서에는 직원을 두도록 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2.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지원 3.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 4.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 6.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특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사서와 전문직원에 대한 언급만 있고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무조항이 없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제2항과 제3항은 운영인력에 관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담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17.,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8. 13., 2018. 8. 2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21.>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시설·자료에 관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설립 등)는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아닌 도서관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추후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및 독서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상호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

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학교도서관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특히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두었다. 이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의 편의성 제공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조사분석 및 연구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요구해 온 전국 작은도서관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과 운용, 도서관리프로그램의 일원화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착안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것을 일깨워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18년 8월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되,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학교도서관은 지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 대체로 학교도서관의 학생수는 대상 학군의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한다.

2021년도에 발행된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4월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교원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1,000명, 중학교가 601명, 일반고등학교가 567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생변동상황을 살펴본 결과 한 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434명이며, 중학교는 평균 416명, 일반고등학교는 59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등을 합산한 고등학교의 평균학생수는 54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9]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

구 분 Classification	학 교 수			학 생 수			학교당 평균학생수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초등학교	6,087	6,120	6,157	2,747,219	2,693,716	2,672,340	451	440	434
중학교	3,214	3,223	3,245	1,294,559	1,315,846	1,350,770	403	408	416
일반고등학교	1,555	1,573	1,616	1,001,756	958,108	961,275	644	609	595
특수목적고등학교	158	160	161	65,244	64,493	63,181	413	403	392
특성화고등학교	489	489	488	230,098	212,294	198,663	471	434	407
자율고등학교	154	145	110	113,929	102,417	76,846	740	706	699
고등학교 합계	2,356	2,367	2,375	1,411,027	1,337,312	1,299,965	599	565	547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학생수별 학교수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6,157개교 중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수는 1,861개교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3,318개 학교의 학생수가 40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학생수별 학교수는 학생수 301명에서 450명 구간이 555개 학교로 100명 이하의 학생수를 보유한 695개 학교를 제외했을 때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451명에서 600명의 학생수가 있는 학교가 451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체적으로 학생수 400명 안팎에서 평균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100명 이하를 학생수를 둔 학교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중등학교 학생수별 학교수

구 분		계	~ 100	101 ~ 200	201 ~ 400	401 ~ 600	601 ~ 800	801 ~ 1,000	1,001 ~ 1,500	1,501 ~
학생수		Total								
총 계	**Total**	**6,157**	1861	468	989	981	784	477	497	100

[표 11] 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교수

구 분		~ 100	101 ~ 150	151 ~ 300	301 ~ 450	451 ~ 600	601 ~ 750	751 ~ 900	901 ~ 1,050	1,051 ~ 1,200	1,201 ~
학생수	Total	100 and less									
중학교수	**3,245**	695	156	439	555	527	390	216	146	89	32
고등학교수	**2,375**	155	84	308	339	451	434	314	204	70	16

해당 결과와 함께 작은도서관의 마을단위의 서비스봉사대상자를 추론해볼 때 한 학교당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조항이 작은도서관의 인력 의무규정을 두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로 마을 단위를 서비스 대상 지역으로 한다. 주택 수와 같은 분포도와 가구당 인구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세대수가 확정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들 수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은도

서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한 세대를 3인 가구로 볼 때 1500명의 잠재적 이용자를 봉사대상자로 둔다고 볼 수 있다.

사서교사는 학생의 교과연계를 통한 독서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와 비교해 적은 인원의 학생 수지만 담당 사서가 반드시 학교에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역시 그 역할과 책임이 지역사회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민주시민 양성, 평생학습 실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더욱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시·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지역의 마을단위 네트워크 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업무의 양과 폭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당 봉사대상 인구와 역할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은 의무적으로 인력을 두어야 하는 시설임에 틀림이 없으며 더불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증가하며 작은도서관이 양적 팽창한다는 우려는 마을단위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세대수별 가족구성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 해 촘촘한 독서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늘어나는 도서관의 수를 규제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인력배치와 구체적인 진흥계획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법체계, 제도적 지원책,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공부방, 방과후교실로 시작된 저소득층 어린이 돌봄 활동에 대해 2004년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시설과 운영기준을

법률로 정비하고 제도화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과 교사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위탁 운영의 형태로 지원을 대신하고 있다.

돌봄센터는 소득의 구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2019년 4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으로 설치 운영기준을 정하였다. (『아동복지법』44조의 2)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2021년 1월 개정되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작은도서관의 전용면적 또한 99제곱미터가 아닌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적격의 사업대상자로 삼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그 공간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는 현실이다.

마을에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용자가 세대별로 구분된 특성이 있다. 노인복지회관, 평생학습관, 학교, 학원 등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작은도서관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 활동과 리터러시 증진사업은 모든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고 관련 지원정책은 수립되

어 선행되어야 하겠다.

(3) 경로당

경로당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37조를 근거로 설치된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보건과 복지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과에서 총괄하며 세부적으로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경로당의 지원은 동법 제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로 삼도록 한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규정하였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대한노인회법)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 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근거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3.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회계 관리 교육
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6.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7. 경로당 운영현황 관리
8.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어 광역 단위의 연합회와 기초단위의 지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영희 등(2020)은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를 통해 사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발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시설인 경로당 수준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도서관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봉사대상자로 하여 이들의 심신의 건강과 생활안정, 독서문화 향유, 평생교육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므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과 같은 교육적 측면, 복지적 측면의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공공적이고 문화복지적인 측면은 작은도서관의 공과금 감면, 자료구입비 등의 보조 등이 의무적으로 지원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연합회 및 지회 등과 같은 관계하는 단체의 지원에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진행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깊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면적 기준의 상향,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의무사항과 전문직원의 기준이 없는 점, 광역단위의 지원센터 설립 요구가 임의조항으로 지원전담부서로 축소된 점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점은 향후 일부개정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남은 과제를 해결할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추가적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설치기준에서 면적을 99제곱미터가 아닌 최소 66제곱미터로 조정하고 기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게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면적 확장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보수 및 공간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용도변경 등의 행정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규모는 작지만, 운영이 잘되는 높은 등급의 작은도서관들이 문을 닫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이 사라지고 일상적 독서문화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 설치의무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최소 3인 가구 기준으로 1,500명을 잠재적 봉사대상자로 볼 수 있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와 같이 의무화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다. 더불어 독서문화를 보편적 문화복지로 인식되게 도와 독서인구 확대와 문화복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주도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다변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예산은 매우 적고 획일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예산 확충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운영비, 공과금 감면, 환경개선비, 관련단체 지원, 공기질 개선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자재 등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법에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되더라도 유사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경로당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지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두어야 한다. 현재 상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원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바른정책과 소통구조를 담당하여 건강한 독서문화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조직구조는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관협력의 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수준의 격차를 줄여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정부와 입법부를 움직이기 위해 단합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펼쳐야겠다.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 아파트 작은도서관, 종교시설 작은도서관, 개인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처한 현실과 입장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수많은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되며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는 인식으로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봉숙.박주현. 2019.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교육부. 2021. 「교육통계연보」, 세종 : 교육부

김종성. 2018. 학교도서관진흥법시대의 과제와 전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59-180.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김홍렬. 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관리학회지」

김홍렬 외. 201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노영희 외. 2020.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71~95

문화체육관광부. 2014.「작은도서관 업무편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2019~2023)」,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오남수. 2013.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윤송현 외. 2021.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주: 청주시의회.

장우권,박주현. 2013.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335~35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연구4
작은도서관 정책제안을 위한 법제적 연구-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2년 5월 1일
지은이 박민주
발행인 백영숙
디자인 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hanmail.net
홈페이지 www.smalllib.org

비매품
※이 책은 (재)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